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

-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참고 : 관련규정 >

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6조(위원장)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□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
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대행 등)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| 책임자 | 사무처장 | 조성은 (02-2110-1300) |
| | | 담당자 | 운영지원과장 | 신영규 (02-2110-1480) |